

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	145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3. 5. 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 안 사 유

- 통장자녀의 장학생 선발기준이 되는 통장의 근무기간을 확대 적용하여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례 개정임.

2 주 요 골 자

- 통장근무기간 확대적용하여 장학생 선발 (안 제2조 참조)

" 3 년 이상 근무한 자" 를 " 2 년 이상 근무 (기존경력 포함) 한 자" 로 개정

3. 참 고 사 항

- 강원 법무 02124 ~ 98 ('93.3.24) 호로 정비안 시달 ————— 별 ————— 철
- 입 법 예 고 ————— '93. 4. 3 ~ '93. 4. 23
- 시정조정위원회 회 부의 ————— '93. 4. 29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

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중 "3년이상 근무한 자"를 "2년이상 근무(기존경력포함)한 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제 2 조(장학생의 자격) 장학생은 통장으로 <u>3년이상 근무한 자의</u>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	제 2 조(장학생의 자격) ----- ----- <u>2년이상 근무(기존경력포함)한</u> <u>자의</u> ----- -----.